

원자력법중 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신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수행체제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자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28일 입법예고 된 후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6년 12월 30일(法律第5233號) 공포되었다.

개정이유

원자력(原子力)안전(安全) 규제(規制)의 독립성(獨立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原子力安全委員會)를 신설(新設)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改善)·보완(補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원자력위원회(原子力委員會)에서 원자력이용(原子力利用) 및 원자력안전(原子力安全)에 관한 사항을 심의(審議)·의결(議決)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자력안전규제(原子力安全規制)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審議)·의결(議決)하도록 함(법제5조)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原子力研究開發事業)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發電用) 원자로 운영자는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새로 설치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법제9조의3 및 제10조의3)

다. 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 성능유지(性能維持)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協議)하여 정하는

부품(部品)은 성능검증업(性能檢證業)의 허가를 받은자의 성능검증(性能檢證)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함(법제42조의2)

라.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위원회의심의(審議)·의결(議決)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법제43조제4항)

마. 원자력관계시설의 관리구역에 상시 출입하면서 방사능오염의 제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운반 등의 원자력관계업무(原子力關係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법제75조의2)

바. 과학기술처가 수행하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사업을 통상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등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의 부담금으로 조성하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폐지함(법제84조의2내지 제84조의5, 제85조 및 제85조의3 삭제(削除))

사. 발전용(發電用) 원자로(原子爐) 및 관계시설(關係施設)의 건설허가 신고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는 공람(供覽) 또는 공청회(公聽會)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意見收斂)을 거쳐 작성·제출하도록 함(법제104조의5)

1996년 12월 30일 “관보”

(법제처 제공)